

축산물

축산물등급제는
생산자에게는 사양지표를!
유통업자에게는 판매지표를!
소비자에게는 구매지표를!

●비매봉 통권 제40호 ●발행일: '99년 12월 15일 ●발행처: 축산물등급관리소 ●주소: 137-1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7-7 ●전화: 02)574-2541 FAX: 02)574-2544
http://www.apgs.co.kr E-mail: master@apgs.co.kr

한우 1(1)

11월달의 한우 1등급 출현율이 24.7%로 나타나 소 냉도체등급판정제가 전면 실시된 지난달 보다는 0.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암소 도축이 전월보다 1.5%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돼지 A등급 출현율은 지난 10월의 34.1%보다 0.2% 증가된 34.3%로 나타났으며, B등급의 출현율은 지난달 수태지 도체가 2개등급 하락으로 27.5%까지 떨어졌으나 11월에 들어서는 30.4%로 무려 2.9%가 높아져 기준 개정 이전인 9월의 출현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자가 새로운 등급기준에 맞춰 출하시기 등을 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 확대

농림부는 2000년 1월1일부터 강원도의 태백시,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의 4개지역을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으로 확대 고시하여 이지역에서도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만 거래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축산물등급거래지역은 소의 경우 기존의 서울, 6대광역시 및 9개도의 151개 시·군에서 155개 시·군으로 확대되며 돼지의 경우는 변동이 없어 서울, 6대광역시 및 7개도의 16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관련기사 6,7면 참조)

경기도 시·군차별 등급화

본소는 경기도의 7개 시·군과 공동으로 소비자인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소 냉도체등급판정의 필요성과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주부1일식육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주부1일식육교실의 주요 교육내용은 냉장 숙성육과 냉동육의 차이점 및 고기의 보관요령, 국내산육(1등급, 3등급)과 수입육 비교 시식회 등 통한 품질에 따른 맛의 차이를 체험하여 고기 구입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지역 및 인원은 경기 수원, 고양, 의정부, 의왕, 광명, 하남시와 기평군으로 총 교육인원은 1,400여명에 이른다.

축산물등급화 입찰 확대

농림부와 본소는 지난 10월1일부터 확대 실시된 소 냉도체등급판정제와 2000년 7월1일부터 전국 79개 시로 확대 실시되는 등급별 구분판정제를 홍보하여 농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VTR 테일용 홍보영화를 제작 시·군, 축산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영화 내용은 소 냉도체등급판정의 필요성과 쇠고기의 등급별 구분판정제 안내 및 축산물등급제별 소개하는 내용 등을 기존의 실명식에서 탈피, 드라마형식으로 처리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축육개량협회가 개최한 제4회 전국 한우 능력평가대회가 지난 11월1일부터 5일까지 축협 서울공판장에서 70농가의 210두가 출품된 가운데 개최되어 충남 보령의 오환농장(대표: 이병국)이 종합평점 1위를 차지하고 막을 내렸다.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된 한우의 성적은 1등급이 56두로 26.7%, 1등급이 97두로 46.2%, 2등급은 51두로 24.3%였고 3등급은 6두로 42.9%에 불과했으며, 고급육인 1등급(1등급 포함)은 153두로 무려 72.9%에 달하였다.

육량등급 출현율에 있어서는 A등급이 124두로 59.1%, B등급이 74두로 34.2%, C등급이 12두로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된 소(거세우)의 성적 평균은 생체중 581.8kg, 도체중 355.8kg, 등지방두께 8.6mm, 매최장근단면적 81.9cm로 육량지수는 68.98이었고, 육질등급판정의 주요 항목인 근내지방도는 4"이었다.

농림부가 발표한 '99.10 도축신적 자료에 의하면 소의 도축두수가 7만838두로 추석명절로 인해 도축두수가 많았던 전월의 12만 2천11두 보다 41.8%, 전년동월의 93,589두 보다는 24.3%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암소는 4만2천 600두, 수소는 2만8천238두로 암소도축 비율이 60.1%로 전년 동월의 53.4%보다 6%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소 사육기반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의 도축두수는 112만9천951두로 전월의 추석 성수기에 따른 도축두수 몰량인 102만2천542두 보다 11.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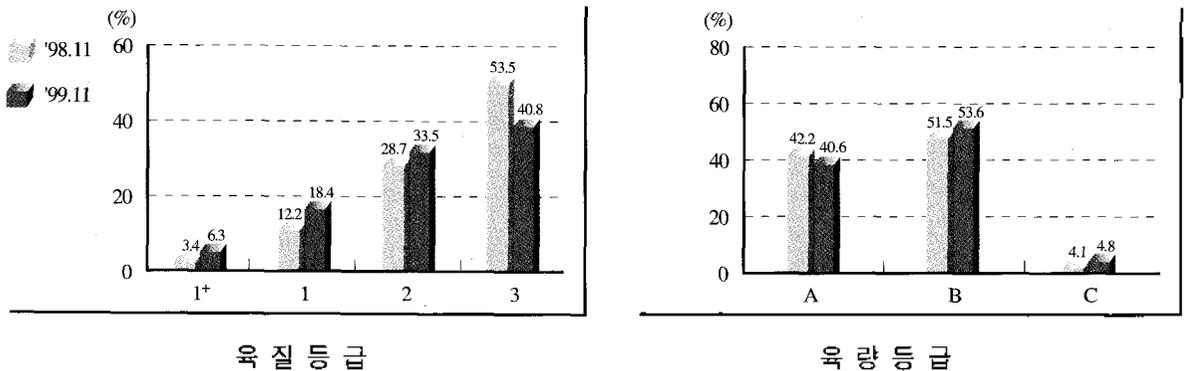
소도체 등급판정결과('99년 11월)

'99년 11월 소 등급판정두수는 79,192두였으며, 그중 한우는 65,036두(82.1%)였다. 한우 육질1*등급은 6.3%, 1등급 18.4%, 2등급 33.5%, 3등급 40.8%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년동기보다 9.1% 증가하였다.

육량A등급은 40.6%, B등급은 53.6%, C등급은 4.8%가 출현되어 전년동기보다 A등급 출현율이 1.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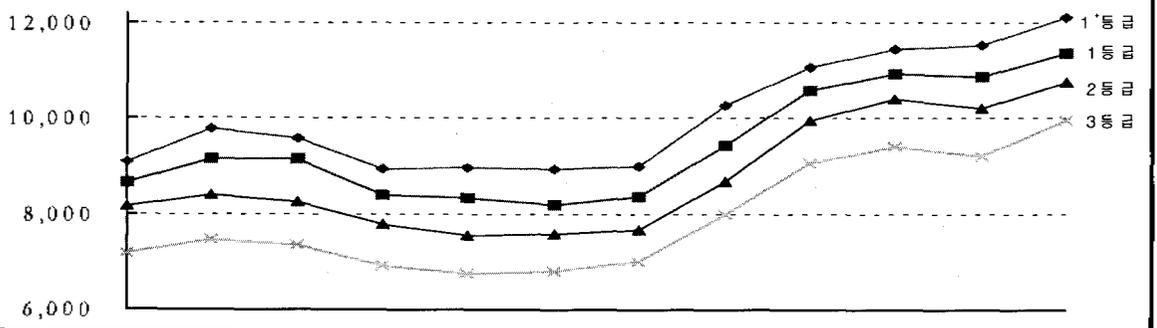
'99.11월 축협서울공판장의 한우도체 평균 경락가격(원/kg)은 전월보다 627원이 오른 10,846원이었고 육질 1*등급 평균가격(B등급기준)은 12,111원, 1등급 11,359원, 2등급 10,752원, 3등급은 9,939원으로 전월보다 1*등급은 587원, 1등급 493원, 2등급 538원, 3등급은 744원씩 각각 올랐다.

1. 한우 등급별 출현율(전국)



2. 한우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서울공판장)

(단위 : 원/kg)



등급	'99.12	'99.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9,089	9,780	9,581	8,929	8,974	8,934	9,004	10,271	11,068	11,447	11,524	12,111
1	8,644	9,140	9,152	8,389	8,338	8,201	8,362	9,443	10,573	10,941	10,866	11,359
2	8,155	8,387	8,261	7,783	7,556	7,580	7,667	8,683	9,959	10,409	10,214	10,752
3	7,196	7,482	7,350	6,920	6,738	6,812	6,996	7,976	9,059	9,394	9,195	9,939
등 외	5,533	6,184	5,407	5,112	4,542	4,632	5,161	6,292	6,450	6,997	6,651	7,313
평균	7,877	8,257	8,116	7,587	7,496	7,431	7,629	8,818	10,091	10,332	10,219	10,846

주) B등급 기준임.

3. 도매시장별 한우 경락가격('99년 11월)

(단위 : 원/kg)

도매시장	성별	등급별 경락가격													
		평균	A1 ⁺	A1	A2	A3	B1 ⁺	B1	B2	B3	C1 ⁺	C1	C2	C3	등외
서울축공 (서울)	암	10,448	12,513	11,559	10,938	10,124	12,002	11,230	10,620	9,786	11,019	10,448	9,919	9,052	7,429
	수	10,561	13,094	12,100	11,568	10,550	-	11,394	10,930	10,048	-	-	9,155	8,653	5,343
	거세	11,588	13,013	12,132	11,460	10,662	12,215	11,496	11,054	10,502	11,374	10,633	10,053	9,162	-
태강산업 (서울)	암	9,793	-	11,599	10,631	-	11,122	10,882	10,490	9,878	10,470	10,037	9,466	7,555	5,364
	수	10,367	-	11,591	11,073	10,135	-	11,500	11,149	9,634	-	9,809	9,695	8,040	4,005
	거세	11,578	11,996	-	10,800	-	11,748	11,600	-	-	-	-	-	-	-
동원산업 (부산)	암	10,176	11,913	11,131	10,638	9,915	11,709	10,969	10,421	9,459	10,777	10,321	9,152	8,409	6,293
	수	8,153	-	-	9,510	8,600	-	-	-	8,350	-	-	-	7,600	6,510
	거세	-	-	-	-	-	-	-	-	-	-	-	-	-	-
태강산업 (김해)	암	10,424	11,725	11,001	10,700	9,867	11,617	10,986	10,586	9,622	10,788	10,191	9,440	8,622	4,893
	수	8,213	-	-	-	9,550	-	-	-	7,767	-	-	-	-	-
	거세	-	-	-	-	-	-	-	-	-	-	-	-	-	-
신흥산업 (대구)	암	-	-	-	-	-	-	-	-	-	-	-	-	-	-
	수	11,233	-	12,879	12,600	11,040	-	-	12,299	10,572	-	-	-	7,567	7,000
	거세	12,529	12,857	12,620	12,500	11,200	-	12,275	-	11,000	-	-	-	-	-
삼성식품 (인천)	암	9,313	-	-	10,898	10,039	11,551	11,545	10,975	9,858	-	-	9,199	8,541	4,856
	수	8,973	-	-	10,599	-	-	-	11,397	7,997	-	-	-	-	5,899
	거세	-	-	-	-	-	-	-	-	-	-	-	-	-	-
대양식품 (대전)	암	8,702	9,981	8,694	7,924	7,482	9,891	8,993	8,311	7,326	8,916	8,593	7,730	6,695	6,208
	수	8,099	-	8,630	8,817	8,099	-	8,775	8,190	7,090	-	7,445	-	-	6,030
	거세	-	-	-	-	-	-	-	-	-	-	-	-	-	-
축협고령 (고령)	암	7,500	-	-	-	-	-	-	-	10,000	-	-	-	-	5,000
	수	11,193	-	12,911	12,278	11,127	-	12,369	12,066	10,968	-	-	10,989	8,477	-
	거세	11,865	13,094	12,561	12,102	11,159	12,891	12,274	11,754	10,760	-	10,745	10,775	10,303	-
김해축공 (김해)	암	10,452	12,163	11,347	10,822	9,692	11,710	11,115	10,501	9,565	10,939	10,567	9,931	8,867	6,873
	수	8,718	-	-	-	8,510	-	-	10,050	9,096	-	-	-	8,620	5,800
	거세	-	-	-	-	-	-	-	-	-	-	-	-	-	-
제주축공 (제주)	암	10,076	12,360	11,470	-	10,380	10,125	9,953	9,440	-	-	-	-	-	-
	수	9,728	-	11,296	10,463	9,378	-	-	9,800	8,543	-	-	-	-	-
	거세	10,072	12,060	-	-	-	11,360	10,960	-	-	8,290	-	-	7,6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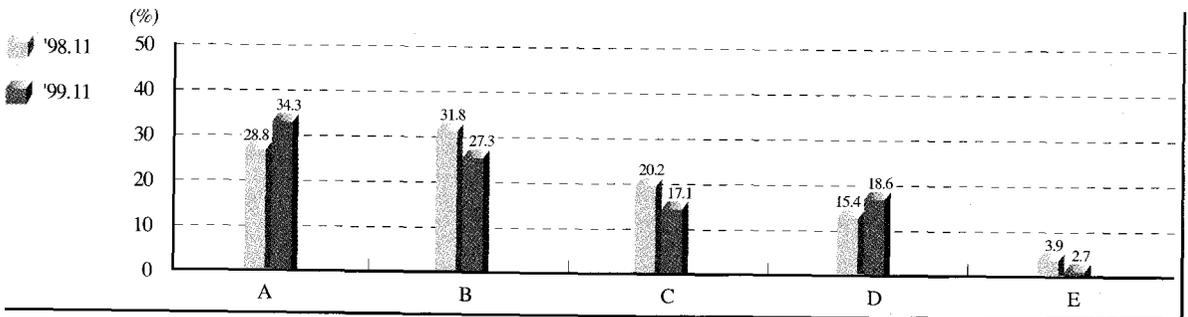
주) 1. 평균 경락가격은 등급별 출원두수가 고려되었음. 3. 대양식품 수 A1 5두, A2 22두 출원분임.
 2. 신흥산업, 축협고령은 부산물(머리,족,꼬리)이 포함된 가격임. 4. 축협고령 거세 C1 2두, C2는 2두 출원분임.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99년 11월)

'99년 11월의 등급판정두수는 1,023,352두로 이중 A등급은 34.3%, B등급 27.3%, C등급 17.1%, D등급 18.6%, E등급 2.7%의 출현율을 보였으며, 상위등급(A,B등급) 출현율이 전년동기 대비 A등급은 5.5%포인트 증가하였고, B등급은 4.5%포인트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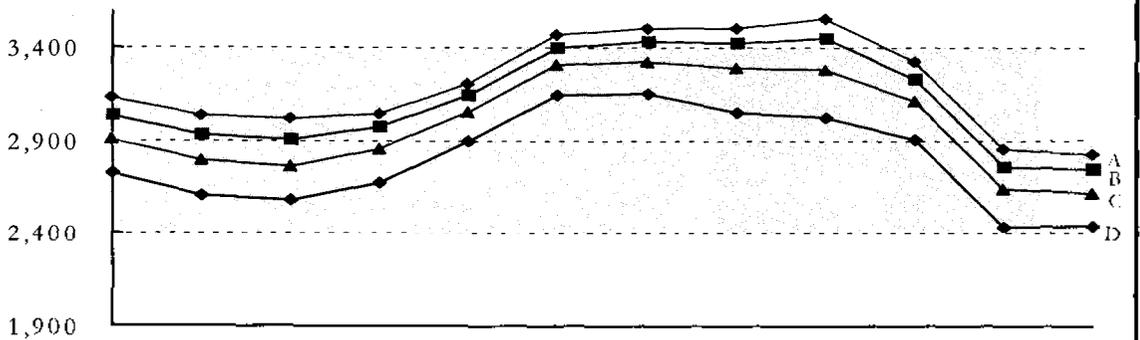
축협서울공판장의 돼지도체 평균경락가격(원/kg)은 전월보다 11원 하락한 2,525원이었고, 암돼지(100% 기준)의 A등급 출현율은 40.5%, B등급 24.2%, C등급 11.3%, D등급 11.1%, E등급 12.9%이었으며 암돼지 A등급 경락가격은 2,820원, B등급 2,742원, C등급 2,616원, D등급 2,440원, E등급은 1,657원으로 A등급과 D등급간에는 380원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1. 등급별 출현율(전국)



2.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암돼지, 서울공판장)

(단위: 원/kg)



등급	'99.12	'99.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A	3,132	3,033	3,016	3,045	3,211	3,470	3,509	3,509	3,554	3,330	2,857	2,820
B	3,040	2,936	2,907	2,973	3,149	3,407	3,434	3,427	3,455	3,236	2,764	2,742
C	2,910	2,794	2,765	2,856	3,055	3,306	3,324	3,296	3,287	3,112	2,639	2,616
D	2,730	2,606	2,583	2,676	2,902	3,150	3,160	3,053	3,025	2,905	2,438	2,440
E	1,934	1,970	1,977	1,963	2,079	2,255	2,192	1,874	1,821	1,882	1,692	1,657
평균	2,888	2,796	2,783	2,829	2,991	3,229	3,236	3,186	3,170	3,029	2,618	2,586

3. 도매시장별 돼지 경락가격('99년 11월)

(단위 : 원/kg)

도매시장	성별	등급별 경락가격					
		평균	A	B	C	D	E
서울축공 (서울)	암	2,586	2,820	2,742	2,616	2,440	1,657
	수	2,286	-	-	2,488	2,315	1,619
	거세	2,472	2,667	2,576	2,411	2,070	1,687
태강산업 (서울)	암	2,631	2,806	2,738	2,680	2,623	1,719
	수	2,379	-	-	2,509	2,389	1,734
	거세	2,397	2,525	2,464	2,376	2,178	1,988
동원산업 (부산)	암	2,621	2,994	2,917	2,806	2,552	1,697
	수	2,361	-	-	2,525	2,416	1,609
	거세	2,460	2,567	2,499	2,395	2,234	1,623
태강산업 (김해)	암	2,438	2,945	2,772	2,522	2,218	1,701
	수	2,261	-	-	2,406	2,311	1,679
	거세	2,444	2,625	2,473	2,317	2,110	-
신흥산업 (대구)	암	2,225	2,834	2,731	2,561	2,337	1,666
	수	2,333	-	-	2,506	2,383	1,582
	거세	2,342	2,468	2,391	2,247	2,068	-
삼성식품 (인천)	암	2,655	2,884	2,768	2,631	2,488	1,703
	수	2,294	-	-	2,470	2,350	1,793
	거세	2,401	2,636	2,507	2,351	2,163	2,102
삼호축산 (광주)	암	2,533	2,803	2,774	2,671	2,448	1,594
	수	2,167	-	-	2,401	2,182	1,560
	거세	2,373	2,446	2,433	2,350	2,164	1,137
대양식품 (대전)	암	2,792	2,887	2,824	2,724	2,561	1,279
	수	2,249	-	-	2,335	2,286	1,005
	거세	2,341	2,320	2,432	2,359	2,197	-
축협고령 (고령)	암	2,507	2,617	2,509	2,406	2,332	1,806
	수	2,254	-	-	2,278	2,238	1,865
	거세	2,238	2,342	2,277	2,195	2,141	1,786
김해축공 (김해)	암	2,570	2,963	2,841	2,583	2,310	1,692
	수	2,092	-	-	2,331	2,179	1,559
	거세	2,387	2,546	2,471	2,295	2,006	1,585
제주축공 (제주)	암	2,674	2,823	2,753	2,555	2,230	1,750
	수	2,325	-	-	2,410	2,277	1,643
	거세	2,371	2,693	2,568	2,344	2,012	1,385

주) 1. 돼지 경락가격은 박피도체 경락가격 기준임. 2. 축협고령 및 제주축공 경락가격은 탕박도체 경락가격임.

농림부고시 제1999-65호

축산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28일
농림부장관

축산물등급거래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 2. “도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제3조(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①축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 대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규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의한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제의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절취한다.

- 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
- 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흉두깨살을 포함한다.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물등급판정사 배치) ①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등급판정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1999-41호('99.7.7)에 의한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급 거래 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시·군	소의도체	돼지도체
서울특별시	전지역	'95. 2. 6	'95. 2. 6
부산광역시	전지역	'95. 6. 1	'95. 2. 6
대구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전지역	'95.10. 1	'95. 6. 1
광주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대전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울산광역시	전지역	'97. 7.15	'97.10. 1
경기도 (31개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주군, 포천군, 연천군, 화성군,	'96. 7. 1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96. 7. 1	'99. 1. 1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사천시, 안산시, 의왕시, 오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양주군, 여주군, 양평군,	'98. 7. 1	-
	부천시	'98. 7. 1	'99. 1. 1
강원도 (18개시군)	원주시, 횡성군, 철원군	'96. 7. 1	-
	춘천시	'96. 7. 1	'99. 1. 1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99. 7. 1	-
	홍천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99.10. 1	-
	태백시,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00. 1. 1	-
충청북도 (11개시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청원군, 옥천군, 괴산군	'96. 7. 1	-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98. 7. 1	-
	청주시	'96. 7. 1	'99. 1. 1
충청남도 (15개시군)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96. 7. 1	-
	보령시, 금산군, 당진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98. 7. 1	-

등급 거래 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시·군	소의도체	돼지도체
전라북도 (14개시군)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신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96. 7. 1	-
	전주시	'96. 7. 1	'99. 1. 1
	정읍시	'98. 7. 1	-
	부안군	'97. 8. 1	-
전라남도 (21개시군)	고창군	'99. 1. 1	-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강진군, 장성군, 해남군	'96. 7. 1	-
	목포시	'97. 1.30	-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98. 7. 1	-
완도군(완도읍·군외면 이외의 도서지역 제외)	'99. 7. 1	-	
경상북도 (21개시군)	안동시, 김천시, 영천시, 영주시, 경산시, 문경시, 고령군	'96. 7. 1	-
	예천군	'98. 7. 1	-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99. 1. 1	-
	경주시, 영덕군	'99. 7. 1	-
경상남도 (20개시군)	포항시	'99. 7. 1	'99. 7. 1
	진주시, 양산시, 진해시, 창녕군, 고성군	'96. 7. 1	-
	김해시	'96. 7. 1	'95. 6. 1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천군	'99. 1. 1	-
제주도 (4개시군)	마산시	'96. 7. 1	'99. 1. 1
	함양군	'98. 7. 1	-
	창원시	'99. 1. 1	'99. 1. 1
제주도 (4개시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95. 2. 6	'95. 2. 6



뉴 밀레니엄, 한우고기 냉장고급육 유통시대가 열립니다!!!

희망찬 새천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99년 10월 1일부터 「소 냉장등급판정제」 실시로 공정하고 정확한 등급판정이 시행되어 1등급 출하가 대폭 늘어나고(16.7% → 25.3) 냉장육 유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냉장고급육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거세 비육우 사육과 도축장에서의 세균 오염을 최소화하고 도축된 쇠고기는 일정기간 숙성시켜야 하며, 가공·수송·판매단계에서 철저한 온도와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하고 냉장육으로 유통하면 품질과 맛이 더욱 좋아지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쇠고기 공급으로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생산자에게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줍니다.

우리모두 한우고기 냉장고급육 유통을 위한 사양기술을 향상시키고 식육의 도·소매 판매시설을 개선하여 수입육과 차별화 하므로써 한우산업의 지킴이가 되도록 다같이 협력 합시다.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시책

- 우수축 출하포상금 확대지급
 - 80 ~ 120천원/두 → 100 ~ 150
 - 한우 1등급 출현율이 40%이상시까지 계속 지급
- 한우브랜드를 육성하여 시장차별화
 - 2004년까지 한우고기전문점 2,000개소 설치
 - 브랜드가맹점 설치 및 운영자금, 가공장 설치자금 지원
- 식육판매모범업소 지정제 실시
 - 2004년까지 3,000개소에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
- 쇠고기 등급거래지역 전국 확대
 - 소매단계의 등급판매지역 : 19개시 → 전국 79개시
 - 축산물등급판정소 업무의 공정성 확보로 신뢰성 제고
- 축산물 부정유통근절
 - 밀도살·미검사·미등급·물먹이는 행위 등
 - 젓소고기·수입육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 등 식육판매업소 준수사항 미준수
 - 수입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유통